

## 5. 環境影響評價法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637號 1995. 4. 28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제4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지역이 2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 전단중 “2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

에”를 각각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으로 한다.

제7항 제6항 전단중 “필요가 있어 제4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제4항·제5조 및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제4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가목(5)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목(7)의 (라)를 삭제한다.

별표 1 다목(2)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25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을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목(5)의 (가)중 “1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다음에 “(집단

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별표 1 아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자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다음 사업”을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관리청이” 앞에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고, 동란의 단서를 삭제하며, 동목(1)의 (가) 및 (나)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카목(3)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동목(4)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의공고전”을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전”으로 하며, 동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공원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음에 동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서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추가한다.

별표 1 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총용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스키장과 자동차 경주장은 총용지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것</p>	<p>○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p>
<p>(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으로서 총용지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것</p>	<p>○ 한국마사회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허가전</p>

별표 1 과목중 (3)을 삭제하고, 동목 (4)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전” 다음에 “,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입지협의 또는 입지승인전”을 추가한다.

별표 1 하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 (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에 더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업단지개발사업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 조성사업을 기존의 공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위표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가. 주택지 조성사업 : 위표중 가목(6)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 위표중 라목(2)

다. 도로건설사업 : 위표중 마목(1)

2. 「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규모는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중 인가·허가·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별표2의 제목중 “지방환경청장관할”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관할”로 한다.

별표2 제1호중 “시장·군수·구청장인 사업” 다음에 “(다만,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별표2 제2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인 사업” 다음에 “(다만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되는 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시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가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그 시기가 지났거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협의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공청회개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공고를 하였거나 공청회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p>더.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p>	<p>(1) 하천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광물의 채취사업으로서의 그 채취면적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p>	<p>○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전,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 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시행하</p>
----------------------------	---	--

는 2만제곱미터이상, 상수원보호 구역상류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킬로미터이내에서는 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2)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훼손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3) 광업법에 의한 광업중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과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규사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면적이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이상인 것과 기타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태풍·폭풍·해일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전)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안에서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

○광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p>(4)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종 해안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골재채취업으로서 골재채취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골재채취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p>	<p>○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전</p>
--	---

###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개최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요청시기를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최하는 공청회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중에 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함(영 제7조 제6항).
- 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채광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채광면적이 2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에너지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함(영 별표 1 다목).
- 다.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결과의 적절한 반영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의 요청시기를 기본설계의 공고전에서 공원계획의 결정전으로 변경함(영 별표 1 카목).
-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의 묘지공원조성사업 및 경마장 설치사업, 해안모래 채취사업 등을 추가하여 사전적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함(영 별표 1 카목·타목·더목) 〈법제처 제공〉